

#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2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반입 허용 폐기물을 추가하고,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반입 허용 폐기물 추가(안 제4조)

- 협약하였을 때 :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, 한국수자원 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거둬들인 부유 폐기물

- 시설 가동률이 떨어질 때 :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

나. 반입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12조의2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3. 10. 16 ~ 11. 5 )결과 : 의견접수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완료

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##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”을 “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과 「폐기물관리법」”으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위치 및 명칭)”을“(위치와 명칭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“재활용선별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7호에 따른”을 ““재활용선별시설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”을 “친환경기술정보센터,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클린 에너지파크에 반입한다. 다만, 협약하였을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거둬들인 부유 폐기물의 반입도 허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가연성폐기물 부족 등으로 소각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출입)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허가를 받은 자만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소각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.

제6조의 제목“(운영 및 관리 등)”을“(운영과 관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전부 또는”을 “전부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운영에

관하여”를 “운영 시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이 경우”를 “이때”로, “없는 한 이에”를 “없으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발생되는”을 “발생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31조제1항 및”을 “법 제31조제1항과”로 한다.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 제5조를 따른다.

제8조제1항 중 “경우”를 “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항에 관하여”를 “사항을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. 제9조제1항 단서 중 “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장하고자 할 때에는”을 “연장하려면”으로, “연장 신청을 하여야”를 “신청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”을 “소각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”로, “강구하여야”를 “마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수탁자는 선량”을 “선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수탁자는 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변경·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5호 중 “수탁자는 소각시설”을 “소각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”을 “매년”으로, “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”를 “소각시설물 전반을 정기·수시 검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령과”를 “법령이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계약 또는 협약”을 “계약·협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유지 관리”를 “유지·관리”로, “임의”를 “마음대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주는 행위를 하였을”을 “주었을”로 한다. 제12조제1항 중 “운영 관리에 소요되”를 “운영·관리에 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사 또는 조사하게”를 “감사·조사하게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반입수수료 등) ① 시장은 「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반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클린에너지파크(소각시설) 수탁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사용하려면 미리”로, “하며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며,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사용료액수”로, “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1과 같으며, 사용료의 감면은 각 시설별로 1일 1회에 한한다”를 “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사용료는 시설별로 하루에 한 번만 감면할 수 있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경우 수탁자에게”를 “때에 수탁자로 하여금”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자는”을 “운영자는 둘 이상이”로, “하는 자가 2 이상일 때에는”을 “접수하게 되면”으로, “경우를 우선으로 하고”를 “행사를 우선으로 하고,”로, “접수순서에”를 “접수순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국가 또는”을 “국가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

제14조제3호 중 “행사 및”을 “행사나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전력·증기와 온수”를 “전력·증기·온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는”을 “인정할 때나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서 사용할 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”를 “때의”로, “등에 관한”을 “등의”로, “계약에”를 “계약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주시클린 에너지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과 「폐기물관리법」</u>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<u>위치 및 명칭</u>) (생 략)</p>	<p>제2조(<u>위치와 명칭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
<p>1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“<u>재활용선별시설</u>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·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·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	<p>2. “<u>재활용선별시설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3. “<u>주민편의시설</u>”이란 클린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, <u>친환경 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</u></p>	<p>3. ----- ----- <u>친환경 기술정보센터,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반입대상 폐기물</u>) <u>클린에너지파크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<u>반입대상 폐기물</u>) ① <u>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클린에너지파크에 반입한다. 다만, 협약하였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31 570 406 614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88 935 766 1271">제5조(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의 출입)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 data-bbox="188 1355 766 1400">제6조(운영 및 관리 등) ① (생략)</p> <p data-bbox="220 1488 766 1942">② 시장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클린에너지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클린에너지파크의</p>	<p data-bbox="831 320 1377 541">때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거둬들인 부유 폐기물의 반입도 허용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31 570 1377 902">② 시장은 가연성폐기물 부족 등으로 소각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져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798 935 1377 1327">제5조(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출입)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허가를 받은 자만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 data-bbox="798 1355 1377 1455">제6조(운영과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831 1488 1377 1942">②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----- ----- ----- 전부나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각시설, 재활용선별시설, 주민편의시설을 각각 분리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하며, 시장은 위탁 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소각재(바닥재)는 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.</p> <p>⑤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수탁자의 선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클린에너지파크 등을 위탁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장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운영 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이 때 -----</p> <p>없으면 -----.</p> <p>④ ----- 발생하는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 법 제31조제1항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7조(수탁자의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」 제5조를 따른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	
<p>제8조(위탁 협약 체결)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, 위탁 내용, 위탁 기간, 예산 지원액,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<u>경우</u>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위탁 협약 체결) ① ---- ----- ----- ----- 때의----- -----.</p>
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운영·관리에 필요한 <u>사항에</u>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<u>사항을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위탁 기간) ① <u>위탁 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3년으로 한다.</u> 단,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<u>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위탁 기간) ① <u>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.</u> -- ----- <u>없으면</u> -----.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<u>연장하고자 할 때에는</u> 기간만료 60일 전에 <u>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 ----- <u>연장하려면</u> ----- ----- <u>신청하여야</u> --.</p>
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<u>수탁자에게 위탁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	<p>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<u>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1.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<u>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</u>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<u>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1. <u>소각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</u> ----- ----- <u>마련하여야</u> --.</p>
<p>2. 수탁자는 <u>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u></p>	<p>2. <u>선량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3. <u>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</u></p>	<p>3.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4. <u>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4. <u>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변경·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5. <u>수탁자는 소각시설·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5. <u>소각시설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6. <u>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6. <u>매년</u> ----- -----<u>소각시설물 전반을 정기·수시 검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위탁의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위탁의 해지) ① ----- ----- <u>때</u> -----.</p>
<p>1. <u>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</u></p>	<p>1. ----- <u>법령이나</u> ----- -----</p>
<p>2. <u>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</u></p>	<p>2. <u>계약·협약</u> ----- -----</p>
<p>3.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<u>클린에너지파크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</u></p>	<p>4. ----- <u>유지·관리</u>----- ----- <u>마음대로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였을 때</p> <p>5.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</p> <p>제12조(위탁운영비 등) ①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,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 상황·대장·서류 등을 <u>감사</u> 또는 <u>조사하게</u>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13조(주민편익시설의 사용) ① 주민편익시설을 <u>사용하고자</u>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<u>사용하고자</u>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·징수</p>	<p>-----</p> <p>5. ----- ----- <u>주었을</u> -----</p> <p>제12조(위탁운영비 등) ① ----- ----- <u>운영·관리에 드는</u>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사</u> <u>·조사하게</u> -----.</p> <p>제12조의2(반입수수료 등) ① 시장은 「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량 배출폐기물 반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클린에너지파크(소각시설) 수탁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주민편익시설의 사용) ① ----- <u>사용하려면</u> ----- <u>미리</u> ----- <u>하며</u>, <u>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를</u> <u>받은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<u>사용료</u>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<u>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1과 같으며, 사용료의 감면은 각 시설별로 1일 1회에 한한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<u>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) <u>운영자는 동일기간에 주민편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가 또는 시가 주최·주관 하는 행사</u></li> <li>2. <u>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</u></li> <li>3. <u>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</u></li> </ol> <p>제15조(소각열의 이용) ① <u>클린 에너지파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·증기와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. 다만, 공익상 시장이</u></p>	<p>----.</p> <p>② ----- <u>사용료 액수</u> ----- ----- <u>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사용료는 시설별로 하루에 한 번만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<u>때에 수탁자로 하여금</u> -----.</p> <p>제14조(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) <u>운영자는 둘 이상이</u> ----- ----- <u>접수하게 되면</u> ----- ----- <u>행사를 우선으로 하고,</u> ----- <u>접수순서를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가나</u> -----</li> <li>2. <u>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나 행사</u></li> <li>3. ----- <u>행사나</u> -----</li> </ol> <p>제15조(소각열의 이용) ① ---- ----- ----- <u>전력·증기·온수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인정할 때나 소각시설을 유치한 마을에서 사용할 때는 -----.</p>
<p>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 기간, 공급 조건, 판매 대금,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.</p>	<p>② ----- 때의 ----- 등의 ----- 계약을 -----.</p>
<p>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.</p>	<p>제16조(지역주민의 감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.</p>
<p>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주시 폐기물관리법」, 「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, 「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</p>	<p>제17조(준용) -----  <u>않은 그 밖의</u>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8조(시행규칙) 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---  -----.</p>

# 관계법령

## □ 폐기물관리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>

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·개발·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며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 "반입수수료"라 한다)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.